청평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규정은 '청평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본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제8호 및 제9호,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의 원칙】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되, 일반 사안의 경우 '징계 외 생활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 보호 ·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가.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 학생생활교육사항심의(교무부장, 학년부장, 생활담당교사, 교사 등)

라.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회의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3조【징계의 종류】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4조 【선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① 교내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학교의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할 수 있다.)
2.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④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선도 기준】학교생활인권규정에 위반되어 교육목적 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1	학습 시 전체 학생에게 수업 분위기를 심하게 흩뜨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소란, 심한 말장난 등 수업방해)	○	○	○		
2	학생의 신분으로서 도벽, 방화, 고의적 기물파손 등을 한 경우	○	○	○		
3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	○	○		
4	기타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제16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재심의 신청】

①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18조 【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20조 【선도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③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21조【이의제기 절차】처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신청기간	•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심의)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그밖의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3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2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2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으며 서로간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2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교육부 학교 고충신고 상담전화 1588-7179
2. 경찰청 범죄신고 117
3.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4.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 교원은 아동 복지법 제 26조에 의거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와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및 계발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복도통행 시 질서를 유지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8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제2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방과후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0조【출결사항】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 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 교류(교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31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훈령에 의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ㅇ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ㅇ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ㅇ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ㅇ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ㅇ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ㅇ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2
	ㅇ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32조【출석사항 평가】

① 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33조【결석】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출석정지 조치한 경우

③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5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경우 장기결석으로 하고, 출결 특기사항에 결석사유를 기재한다.

제34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5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⑤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 출입을 금한다.

제3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 통신

제3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8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 한다.

③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④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⑤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제39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생활인권교육 자료실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 · 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3일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예 · 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학생지도

제40조【안전지도】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현장 학습 시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1조【진로지도】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직업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2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도의적 책임과 함께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5절 학생자치회

제44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5조【권리 및 의무】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기구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자치회 회장은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적으로 학교장 및 담당교사와 면담을 가질 수 있다.
⑥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협의)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

제46조【협의·지원사항】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행사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7조【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8조【학급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3학년 이상 각 학급에 3명(회장 1명, 남학생 부회장 1명, 여학생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운영은 학급 교육과정 내에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한다.

제49조【전교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가.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가. 생활계획 및 실천사항 결의
나. 학생복지, 학교교육활동 프로그램 관련 사항,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가. 전교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학생자치회의 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 외에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학급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전교 학생자치 회장, 부회장은 **5~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학생대표 선거권은 **5~6학년**으로 제한한다.)
④ 최근 6개월 이내에 선도처분(특별교육 이상)을 받은 학생, 학교폭력처분(4호 이상)은 입후보할 수 없다.
⑤ 임기 중 선도처분(특별교육 이상)을 받은 학생, 학교폭력처분(4호 이상)은 자동 박탈한다.(삭제)
⑥ 학생 자치회 임원의 임기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선거권을 5~6학년으로 제한함은 2020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1조 【정보 결정 및 접근권 보장】
① 자기 정보 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②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의 정보 접근권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제6절 시상

제52조 【학생 시상】우리 학교 시상은 학교포상규정에 의해 수여한다.
① 교내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교육목표 구현사업, 노력중점사항 및 특색사업 등의 활동에 준하며, 교내 각종 대회 및 경연, 행사에서 입상이나 우수한 아동은 별도의 대회 및 행사 운영 계획에 준한다.
② 대외상은 대외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에 합당한 학생 담당

교사나 학급 담임 교사가 추천한 후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추천한다.

③ 졸업 예정자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은 학교포상 규정에 의한다.

제6장 학생의 인권존중

제53조【차별로부터의 보호】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차별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4조【위험으로부터의 보호】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55조【학습권 존중】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56조【교육활동의 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사전 계획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사전에 계획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7조【학생의 개성 발휘】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자유를 가진다.

② 두발 등의 용모, 복장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학생은 스스로 단정한 두발 등의 용모, 복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8조【사생활의 보호】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제한한다.

③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나 수업시간 및 제한된 장소에서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은 학급 구성원이 정하는 규칙에 의한다.

④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9조【사생활의 비밀 보호】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직원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0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교홈페이지, 기타 방법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의사표현】

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은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을 한다.

제62조【이성교제, 양성평등, 성소수자】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3조【타인의 소유물 존중 및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항정신성 의약품,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하여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한다.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6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내화는 실외화와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슬리퍼 착용은 제한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을 하거나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색조 화장 및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제한한다.

제65조【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의 참여】

① 학생은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이 수렴 되도록 노력한다.

제66조【학생복지】

①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학생 건강, 체력증진, 휴식 등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시설 개선 및 좋은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정

제67조【목적】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8조【위원회 운영 및 절차】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보호자, 교원,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⑦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제·개정안 발의→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제·개정 사안 마련→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공포 및 보고→제·개정 규정 안내→적용 및 환류의 절차를 따른다.

제69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 【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 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5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9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6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4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8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9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10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1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